축산관련 종사자가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법률

이형찬 변호사 · 수의사
법무법인 에이치스

-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수의사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2016. 3.)
- 법무법인 에이치스 변호사 (축산 · 식품 · 농림, 의료, 보험, 유공)

-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 녹색소비자연대 건강안전운영위원(식품분야)
-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정회원
- 건국대학교 농식품안전인증센터 운영위원
- 서울시수의사회 자문변호사, 대한수의사회 청년소통위원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용의약품 발전대책마련 TF회의 위원

문의. leeavocat@gmail.com
010-6742-0618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축산선진국의 국민들은 축산업을 풍요로운 전원산업이라 인식한다. 이들은 축산업이 국민의 주요한 단백질 공급원임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며, 농촌의 주요 소득원임을 이해하고 있다. 자국 축산물을 신뢰하고,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자국 축산물을 소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실정은 어떠한가. 국민들은 축산업이 분뇨와 악취를 생산하는 혐오산업이라 생각한다. 축사가 들어서려고 하면 이웃 주민들은 관할 행정청에 각종 민원을 제기하며 극렬하게 반대한다.

축산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시선이 이렇게 상반된 이유는 무엇일까? 축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몰이해가 근본적인 이유겠지만, 축산업 종사자들의 축산관련법률에 대한 이해부족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물론 당장 기요틴(단두대)에 올려야 할 법적 규제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하지만 축산관련법률을 이해하고 있어야 해당 규제의 불합리성에 대하여도 주장할 것 아닌가.

특히 축산업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축산관련법률의 목적과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정부 및 국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률의 개정 방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축산업에 적용되는 전반적인 축산관련법률에 대하여 살펴보고, 각 법률의 목적과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자.

축산관련 법률은 축산농가에서 가축을 키워 도축한 후, 유통과정을 거쳐 국민의 식탁에 제공되는 모든 과정을 규정한다. 각 과정에 따라 사육시설과 가축에 적용되는 법률, 축산물 유통에 적용되는 법

률, 동물복지형 축산업에 적용되는 법률 등으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다.

먼저 사육시설에 적용되는 법률을 살펴보자. 「축산법」은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마련된 법이다. 허가제 및 등록제를 통해 가축사육업 농가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사육시설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여러 규제를 통해 가축사육시설의 설치 단계부터 환경과의 조화를 꾀한다.

가축의 항생제 오남용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약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등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항생제로 인한 국민의 생명 · 신체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고, 가축전염병의 발병과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

가축이 먹는 사료에 대한 법도 존재한다. 「사료관리법」은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해 가축이 섭식하는 사료의 안전을 담보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또는 '사료공장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등 행정규칙을 통해 사료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한다.

축산물 유통에 적용되는 법률도 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은 방역의 효율성과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하고 그 관리를 위해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축의 도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에서 책임진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가축의 사육 · 도살 ·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 · 유통 ·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특히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 등의 유통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도살과정에서 가축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공포, 스트레스를 가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에서 일부 규정을 두고 있다.

축산물을 포함한 모든 음식물의 최종소비 직전단계에서의 위생상태는 「식품위생법」이 담당하고 있다. 위해식품 등이나 병든 동물고기 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위해평가 및 판매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아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에 관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제조 · 가공 · 사용 · 조리 ·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동물복지형 축산업'에 대한 법률도 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유기축산 및 무항생제축산,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의 안전관리인증농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보호법상」의 동물복지축산농장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축산농가를 운영하며 맞닥뜨릴 수 있는 법률은 이처럼 너무나 다양하다. 위와 같은 축산관련법률은 가축의 사육 및 도축, 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가축의 질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가축사육시설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축산농가들은 위와 같은 법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질 높은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축산업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영국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격언(格言)은 축산농가에도 유효하다. '아는 것은 힘이다(scientia est potentia).'